|  |  |  |
| --- | --- | --- |
| **1.2.26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  (상무부 령 2004년 제8호, 2015년 10월 28일 <상무부의 일부 규장 및 규범성 문건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조 대외개방을 가일층 확대하고, 유통시스템 구축을 정비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및《회사법》등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외국회사, 기업과 기타의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투자자'라 약칭함')은 중국 내에서 외상투자 상업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본 방법을 준수해야한다.  제3조 외상투자 상업기업은 이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을 말한다.  (1) 커미션 대리: 화물의 판매대리상, 중개인 또는 경매인，또는 기타의 도매상이 계약을 통해 타인의 화물을 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수취하는 활동  (2) 도매: 소매상과 공업, 상업, 기관 등의 사용자 또는 기타의 도매상을 상대로 화물을 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3) 소매: 고정 장소 또는 TV, 전화, 우편, 인터넷, 자판기를 통해 개인 또는 단체소비에 사용하는 화물을 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4) 특허경영: 보수 또는 특허경영료의 수취를 위해 계약의 체결을 통해 타인에게 자사 상표, 상호, 경영방식 등의 사용을 허용하는 활동  외국회사, 기업과 기타의 경제조직 또는 개인은 반드시 중국 내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을 통해 전관(1), (2), (3), (4)항 규정의 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4조 외상투자 상업기업은 마땅히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規章을 준수해야하며 그 정당한 경영활동 및 합법적인 권익은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국가상무주관부문은 법에 의해 외상투자 상업분야 및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제6조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외국투자자는 마땅히 양호한 신용이 있어야하며 중국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規章 위반행위가 없어야 한다. 비교적 강한 경제실력, 선진적인 상업경영 관리경험과 마케팅기술, 광범위한 국제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외국투자자의 외상투자 상업기업 설립을 권장한다.  제7조 외상투자 상업기업은 마땅히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한다.  (1) 최저 등록자본금이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한다.  (2) 외상투자기업 등록자본금과 총 투자액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한다.  (3)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경영기한은 일반적으로 30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중서부지역에 설립한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경영기한은 일반적으로 4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8조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점포 개설은 마땅히 도시발전 및 도시 상업발전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9조 허가를 받은 후 외상투자 상업기업은 하기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1) 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 상업기업:  가. 상품의 소매  나. 자영 상품의 수입  다. 국내제품을 구매하여 수출  라. 기타의 관련 부대업무  (2) 도매 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 상업기업  가. 상품의 도매  나. 커미션 대리(경매 제외)  다. 상품의 수출입  라. 기타의 관련 부대업무  외상투자 상업기업은 타인에게 특허경영의 방식으로 점포개설을 허용할 수 있다.  외상투자상업기업은 허가를 받아 일종 또는 수종의 판매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경영상품 종류는 마땅히 계약, 정관의 경영범위 관련 내용 중에 명시해야한다.  제10조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설립과 점포개설은 하기 절차에 의한다.  (1)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프로젝트결정, 타당성연구보고와 기업설립은 일괄 신고와 허가제를 실시한다.  (2) 본조 제1관 제(3)항, 제(4)항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상투자 상업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투자자, 점포개설을 신청하는 이미 설립된 외상투자 상업기업은 외상투자 상업기업 등록지의 성급 상무주관부문에 제12조, 제13조 규정의 신청서류를 각각 제출해야한다. 성급 상부주관부문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초심 후 전부의 서류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상무부에 보고해야한다. 상무부는 마땅히 전부의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 허가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 《외상투자기업 허가증명》을 발급하고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상무부는 본 방법에 의해 성급 상무주관부문에 상기 신청의 심사허가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 상업기업이 그 소재지 성급행정구역내에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이하 조건에 부합하고 아울러 경영범위가 TV, 전화, 우편, 인터넷, 자판기를 통한 판매및 본 방법 제17조, 제18조 열거의 상품에 속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성급 상무주관부문이 그 심사허가권 한도 내에서 심사허가하며 아울러 상무부에 등록보고한다.  가. 단일 점포 영업면적이 3천 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아울러 점포수가 3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외국 투자자가 이미 설립된 외상투자 상업기업을 통해 중국에 설립한 동종점포수가 30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나. 단일점포 영업면적이 3백 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점포수가 30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외국투자자가 이미 설립된 외상투자 상업기업을 통해 중국에 설립한 동종점포수가 3백 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4) 중외합자, 중외합작의 상업기업의 상표, 상호소유자가 내자기업, 중국자연인이며 아울러 중국투자자가 외상투자 상업기업에서 지분을 통제하고 당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경영범위가 본 방법 제17, 18조 열거의 상품에 속하지 않는 경우, 그 설립과 점포신청은 기업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문이 그 심사허가권 한도 내에서 심사 허가한다. 타성에서 점포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또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상무부의 수권을 받지 않은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본조 제1관 제(3), 제(4)항 규정의 심사허가권을 자체로 하급부문에 수권할 수 없다.  제11조 투자자는 마땅히 허가증명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외상투자기업 허가증명》을 소지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제12조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려면 마땅히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1) 신청서  (2) 투자 각 측이 공동 서명 날인한 타당성연구보고서  (3) 계약, 정관(외자 상업기업은 정관만 제출)및 그 부수서류  (4) 투자 각 측의 은행신용증명, 등기등록증명(복사본), 법인대표 증명(복사본), 외국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마땅히 그 신분증명을 제공해야한다.  (5) 투자 각 측의 회계사무소가 심사 회계한 최근 1년의 회계심사보고서  (6) 중국투자자가 중외합자, 중외합작의 상업기업에 투입하고자 하는 국유자산에 관한 평가보고서  (7) 설립하고자 하는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수출입 상품목록  (8) 설립하고자 하는 외상투자 상업기업 이사회 구성원명단 및 투자 각 측의 이사 위임서  (9)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제출한 기업명칭가허가 통지서  (10) 설립하고자 하는 점포의 토지사용증명서류(복사본) 및(또는) 건물임대협의(복사본), 단 개설 영업면적이 3천평방미터 이하의 점포는 제외한다.  (11) 설립하고자 하는 점포 소재지정부 상무주관부문이 제출한 도시발전 및 도시상업발전요구에 부합한다는 설명서류  비법인대표가 서명 날인한 서류인 경우에는 마땅히 법인대표의 위임수권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이미 설립된 외상투자 상업기업이 점포개설을 신청할 경우, 마땅히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계약, 정관의 수정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마땅히 수정후의 계약,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  (3) 점포개설 관련 타당성연구보고서  (4) 점포개설 관련 이사회결의서  (5) 기업의 최근 1년의 회계심사보고서  (6) 투자 각 측의 등기등록 증명(복사본), 법인대표증명(복사본)  (7)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의 토지 사용권증명서류(복사본) 및 (또는)건물임대협의(복사본), 단 개설 영업면적이 3천평방미터이하인 점포는 제외한다.  (8)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 소재지 정부가 제출한 도시발전 및 도시 상업발전요구에 부합한다는 설명서류  비법인대표가 서명 날인한 서류인 경우에는 마땅히 법인대표의 위임수권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외상투자상업기업이 체결한 상표, 상호 사용허가 계약, 기술양도계약, 관리계약, 서비스계약 등의 법률문건은 마땅히 계약의 부수서류(외자상업기업은 정관의 부수서류로 한다)로 일괄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외상투자 상업기업이 사용하는 토지는 마땅히 국가의 관련 토지관리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하며 공개입찰, 경매, 공시 등의 방식으로 상업용지를 취득해야한다.  제16조 외상투자 상업기업이 국가가 특수규정을 하는 상품 및 쿼터, 허가증관리의 수출입상품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한 수속을 해야 한다.  제17조 외상투자 상업기업이 하기 상품을 경영할 경우, 본 방법 규정에 부합해야 하는 외 또 하기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외상투자상업기업이 도서, 신문, 간행물을 경영할 경우 마땅히《외상투자 도서, 신문, 간행물 판매기업 관리방법》에 부합해야 한다.  외상투자 상업기업이 주유소를 경영, 가공유소매에 종사할 경우, 마땅히 안정적인 가공유공급루트를 가지고 있고 현지 주유소건설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경영시설이 기존의 국가표준과 계량검정규칙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소방, 환경보호 등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구체 실시방법은 상무부에서 별도 제정한다.  외상투자 상업기업이 약품을 경영하는 경우, 마땅히 국가의 약품판매 관련 관리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상무부에서 별도 제정한다.  외상투자상업기업이 자동차를 경영하는 경우, 마땅히 경영범위내에서 경영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시방범은 상무부에서 별도 제정한다.  본 방법 제18조와 본조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상이 농부산물, 농업생산자료 상업기업을 투자 설립할 경우 지역, 지분비율과 투자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도매 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 상업기업은 2004년 12월 11일전까지 약품, 농약과 농용 비닐박막을 경영할 수 없다. 2006년 2월 11일전까지 화학비료, 가공유와 원유를 경영할 수 없다.  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 상업기업은 2004년 12월 11일전까지 약품, 농약, 농용 비닐박막과 가공유를 경영할 수 없다. 2006년12월 11일전까지 화학비료를 경영할 수 없다.  도매 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 상업기업은 소금, 담배를 경영할 수 없으며 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 상업기업은 담배를 경영할 수 없다.  제18조 동일 외국투자자가 국내에 개설한 점포가 누계 30개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경영상품이 도서, 신문, 잡지, 자동차(2006년 12월 11일부터 본 제한 취소), 약품, 농약, 농용 비닐박막, 화학비료, 가공유, 양곡, 식물유, 설탕, 면화 등의 상품을 포함하고 아울러 상기 상품이동일 브랜드에 속하지 않고 동일 공급상이 공급한 것이 아닌 경우,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외상투자 상업기업이 타인에게 특허경영의 방식으로 점포개설을 허용할 경우, 본방법 규정을 준수하는 외 국가가 특허경영활동에 대해 별도 규정을 한 경우, 마땅히 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 외상투자 상업기업이 경매업무를 경영할 경우, 마땅히《경매법》,《문물법》등의 관련 법률에 부합해야 하며 상무부에서 심사 허가한다.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21조 2004년 12월 11일부터 외상투자상업기업의 설립을 허용한다.  제22조 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 상업기업 및 그 점포의 설립지역은 2004년 12월 11일전까지 성 소재지도시, 자치구 수도, 직할시, 計劃單列市와 경제특구로 제한한다. 2004년 12월 11일 이후에는 지역제한을 취소한다.  도매 업무에 종사하는 외상투자 상업기업은 본 방법 실시일로부터 지역제한을 취소한다.  제23조 외상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상업분야에 투자할 경우,《외상투자기업 국내투자에 관한 잠정 규정》에 부합해야하며 아울러 본 방법을 참조한다.  제24조 외상투자 상업기업이외의 기타 외상투자기업이 본 방법 제3조 열거의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마땅히 본방법 규정에 부합해야하며 아울러 법에 의해 상응한 경영범위를 변경해야 한다.  제25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투자자,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중국 기타 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 상업기업을 투자 설립할 경우, 하기 규정외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1) 2004년 1월 1일부터 홍콩, 마카오 상업서비스제공자는 내지에서 외자상업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2) 홍콩, 마카오 상업서비스제공자의 내지에서의 소매기업 설립지역범위는 지구급 시까지 확대하며 광동성에서는 현급시까지 확대한다.  (3) 2004년 1월1일부터 홍콩, 마카오 상업서비스제공자는 본방법의 관련 조항에 의해 내지에서 자동차 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상업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단, 신 청전 3년의 연평균 매출액이 1억 달러 미만이어서는 안 되며 신청전 1년의 자산액이 1천만달러미만이어서는 안된다. 내지에 설립하는 자동차소매기업의 등록자본금은 최소한 1천만 인민폐이어야 하며 중서부지역에 설립하는 자동차소매기업은 등록자본금이 최소한 6백만 인민폐이어야 한다.  (4) 홍콩, 마카오의 영구 주민중의 중국공민이 내지의 관련 법률, 법규와 規章에 의해 개인공상업소를 설립하여 상업소매활동(특허경영제외)에 종사함을 허용하며, 그 영업면적은 3백 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  (5) 본조에서 규정하는 홍콩, 마카오 상업서비스제공자는 마땅히《내지와 홍콩간 보다 긴밀한 경무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와《내지와 마카오간 보다 긴밀한 경무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에서 말하는 “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정의 요구에 부합해야한다.  제26조 외상투자 상업기업이 관련 업종협회의 가입을 통해 기업의 자율을 강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7조 본 방법은 상무부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28조 본 방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 원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연합 발표한《외상투자 상업기업 시범 방법》은 본 방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  | **外商投资商业领域管理办法**  （商务部令2004年第8号，根据2015年10月28日《商务部关于修改部分规章和规范性文件的决定》修正）  　　第一条 为进一步扩大对外开放，完善市场流通体系的建设，根据《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及《公司法》等法律、行政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外国公司、企业和其它经济组织或者个人（以下简称“外国投资者”）在中国境内设立外商投资商业企业，从事经营活动，遵守本办法。  　　第三条 外商投资商业企业是指从事以下经营活动的外商投资企业：  　　（一）佣金代理：货物的销售代理商、经纪人或拍卖人或其他批发商通过收取费用在合同基础上对他人货物进行的销售及相关附属服务；  　　（二）批发：对零售商和工业、商业、机构等用户或其他批发商的货物销售及相关附属服务；  　　（三）零售：在固定地点或通过电视、电话、邮购、互联网络、自动售货机，对于供个人或团体消费使用的货物的销售及相关附属服务；  　　（四）特许经营：为获取报酬或特许经营费通过签订合同授予他人使用其商标、商号、经营模式等。  　　外国公司、企业和其它经济组织或者个人必须通过在中国境内设立的外商投资企业从事前款第（一）、（二）、（三）、（四）项所规定的经营活动。  　　第四条 外商投资商业企业应遵守中华人民共和国法律、行政法规及相关规章，其正当经营活动及合法权益受中国法律的保护。  　　第五条 国家商务主管部门依法对外商投资商业领域及外商投资商业企业的经营活动进行监督和管理。  　　第六条 外商投资商业企业的外国投资者应有良好的信誉，无违反中国法律、行政法规及相关规章的行为。鼓励具有较强的经济实力、先进的商业经营管理经验和营销技术、广泛的国际销售网络的外国投资者举办外商投资商业企业。  　　第七条 外商投资商业企业应当符合下列条件：  　　（一）最低注册资本符合《公司法》的有关规定。  　　（二）符合外商投资企业注册资本和投资总额的有关规定。  　　（三）外商投资商业企业的经营期限一般不超过30年，在中西部地区设立外商投资商业企业经营期限一般不超过40年。  　　第八条 外商投资商业企业开设店铺的，应当应符合城市发展及城市商业发展的有关规定。  　　第九条 经批准，外商投资商业企业可以经营下列业务：  　　（一）从事零售业务的外商投资商业企业：  　　1、商品零售；  　　2、自营商品进口；  　　3、采购国内产品出口；  　　4、其它相关配套业务。  　　（二）从事批发业务的外商投资商业企业：  　　1、商品批发；  　　2、佣金代理（拍卖除外）；  　　3、商品进出口；  　　4、其它相关配套业务。  　　外商投资商业企业可以授予他人以特许经营方式开设店铺。  　　外商投资商业企业经批准可以从事以上一种或几种销售业务，其经营的商品种类应在合同、章程有关经营范围的内容中注明。  　　第十条 外商投资商业企业的设立与开设店铺，按照下列程序办理：  　　（一）外商投资商业企业的立项、可行性研究报告和企业设立一次性申报和核准。  （二）除本条第一款第（三）、（四）项另有规定外，拟设立外商投资商业企业的投资者、申请开设店铺的已设立的外商投资商业企业需向外商投资商业企业注册地的省级商务主管部门分别报送第十二条和第十三条所规定的申请文件。省级商务主管部门对报送文件进行初审后，自收到全部申请文件之日起一个月内上报商务部。商务部应自收到全部申请文件之日起三个月内作出是否批准的决定，对于批准设立的，颁发《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对于不批准的，应说明原因。  　　商务部可以依照本办法授权省级商务主管部门审批上述申请。  （三）从事零售业务的外商投资商业企业在其所在地省级行政区域内开设店铺，如符合以下条件且经营范围不涉及电视、电话、邮购、互联网络、自动售货机销售及本办法第十七条、十八条所列商品的，由该省级商务主管部门在其审批权限内审批并报商务部备案。  　　1、单一店铺营业面积不超过3000平方米，且店铺数量不超过3家，其外国投资者通过设立的外商投资商业企业在中国开设同类店铺总数不超过30家；  　　2、单一店铺营业面积不超过300平方米，店铺数量不超过30家，其外国投资者通过设立的外商投资商业企业在中国开设同类店铺总数不超过300家。  （四）中外合资、合作商业企业的商标、商号所有者为内资企业、中国自然人，且中国投资者在外商投资商业企业中控股、该外商投资商业企业的经营范围不涉及本办法第十七、十八条所列商品的，其设立及开店申请由企业所在地省级商务主管部门在其审批权限内审批。如跨省开设店铺，还应征求拟开设店铺所在地省级商务主管部门的意见。  未经商务部授权，省级商务主管部门不得自行下放本条第一款第（三）、（四）项所规定的审批权。  　　第十一条 投资者应当自收到批准证书之日起一个月内，凭《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向工商行政管理机关办理登记手续。  　　第十二条 申请设立外商投资商业企业，应当报送下列文件：  　　（一）申请书；  　　（二）投资各方共同签署的可行性研究报告；  　　（三）合同、章程（外资商业企业只报送章程）及其附件；  　　（四）投资各方的银行资信证明、登记注册证明（复印件）、法定代表人证明（复印件），外国投资者为个人的，应提供身份证明；  　　（五）投资各方经会计师事务所审计的最近一年的审计报告；  　　（六）对中国投资者拟投入到中外合资、合作商业企业的国有资产的评估报告；  　　（七）拟设立外商投资商业企业的进出口商品目录；  　　（八）拟设立外商投资商业企业董事会成员名单及投资各方董事委派书；  　　（九）工商行政管理部门出具的企业名称预先核准通知书；  　　（十）拟开设店铺所用土地的使用权证明文件（复印件）及（或）房屋租赁协议（复印件），但开设营业面积在3000平方米以下店铺的除外；  　　（十一）拟开设店铺所在地政府商务主管部门出具的符合城市发展及城市商业发展要求的说明文件。  　　非法定代表人签署文件的，应当出具法定代表人委托授权书。  　　第十三条 已设立的外商投资商业企业申请开设店铺，应当报送下列文件：  　　（一）申请书；  　　（二）涉及合同、章程修改的，应报送修改后的合同、章程；  　　（三）有关开设店铺的可行性研究报告；  　　（四）有关开设店铺的董事会决议；  　　（五）企业最近一年的审计报告；  　　（六）投资各方的登记注册证明（复印件）、法定代表人证明（复印件）；  　　（七）拟开设店铺所用土地的使用权证明文件（复印件）及（或）房屋租赁协议（复印件），但开设营业面积在3000平方米以下的店铺除外；  　　（八）拟开设店铺所在地政府出具的符合城市发展及城市商业发展要求的说明文件。  　　非法定代表人签署文件的，应当出具法定代表人委托授权书。  　　第十四条 外商投资商业企业签订的商标、商号使用许可合同、技术转让合同、管理合同、服务合同等法律文件，应作为合同附件（外资商业企业应作为章程附件）一并报送。  　　第十五条 外商投资商业企业开设店铺所用土地，应当按照国家有关土地管理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以公开招标、拍卖、挂牌等方式取得商业用地。  　　第十六条 外商投资商业企业经营国家有特殊规定的商品以及涉及配额、许可证管理的进出口商品，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手续。  　　第十七条 外商投资商业企业经营下列商品，除必须符合本办法规定外，还应符合下列规定：  　　外商投资商业企业经营图书、报纸、期刊的，应符合《外商投资图书、报纸、期刊分销企业管理办法》。  外商投资商业企业经营加油站从事成品油零售的，应具有稳定的成品油供应渠道，符合当地加油站建设规划，经营设施符合现有国家标准和计量检定规程的规定，符合消防、环保等要求，具体实施办法由商务部另行制定。  　　外商投资商业企业经营药品的，应符合国家有关药品销售的管理规范。具体实施办法由商务部另行制定。  　　外商投资商业企业经营汽车的，应在批准的经营范围内经营。具体实施办法由商务部另行制定。  　　除本办法第十八条和本条另有规定外，外商投资设立农副产品、农业生产资料商业企业不受地域、股比和投资金额的限制。  　　从事批发的外商投资商业企业，2004年12月11日前不得经营药品、农药和农膜。2006年12月11日前不得经营化肥、成品油和原油。  　　从事零售的外商投资商业企业，2004年12月11日前不得经营药品、农药、农膜和成品油。2006年12月11日前不得经营化肥。  　　从事批发的外商投资商业企业不得经营盐、烟草，从事零售的外商投资商业企业不得经营烟草。  　　第十八条 同一外国投资者在境内累计开设店铺超过30家以上的，如经营商品包括图书、报纸、杂志、汽车（2006年12月11日起取消本限制）、药品、农药、农膜、化肥、成品油、粮食、植物油、食糖、棉花等商品，且上述商品属于不同品牌，来自不同供应商的，外国投资者的出资比例不得超过49%。  　　第十九条 外商投资商业企业授予他人以特许经营方式开设店铺的，除应遵守本办法规定外，国家对特许经营活动另有规定的，还应遵守其规定。  　　第二十条 外商投资商业企业经营拍卖业务，应符合《拍卖法》、《文物法》等有关法律，由商务部予以审批，具体实施办法另行制定。  　　第二十一条 2004年12月11日起，允许设立外资商业企业。  　　第二十二条 从事零售的外商投资商业企业及其店铺的设立地域在2004年12月11日前限于省会城市、自治区首府、直辖市、计划单列市和经济特区。自2004年12月11日以后，取消地域限制。  　　从事批发的外商投资商业企业自本办法实施之日起取消地域限制。  　　第二十三条 外商投资企业在境内投资商业领域的，应符合《关于外商投资企业境内投资的暂行规定》，并参照本办法办理。  　　第二十四条 外商投资商业企业以外的其它外商投资企业，从事本办法第三条所列经营活动的，应符合本办法的规定，并依法变更相应的经营范围。  　　第二十五条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的投资者、台湾地区的投资者在中国其他省、自治区、直辖市投资设立商业企业，除下述规定外，参照本办法执行：  　　（一）自2004年1月1日起，香港、澳门商业服务提供者可以在内地设立外资商业企业。  　　（二）香港、澳门商业服务提供者在内地设立零售企业的地域范围扩大到地级市，在广东省扩大到县级市。  　　（三）自2004年1月1日起，香港、澳门商业服务提供者可依据本办法的相关条款申请在内地设立从事汽车零售业务的商业企业，但其申请前三年的年均销售额不得低于1亿美元；申请前一年的资产额不得低于1000万美元；在内地设立的汽车零售企业的注册资本最低限额为1000万元人民币，在中西部地区设立的汽车零售企业注册资本最低限额为600万元人民币。  　　（四）允许香港、澳门永久性居民中的中国公民依照内地有关法律、法规和规章设立个体工商户从事商业零售活动（除特许经营外），其营业面积不超过300平方米。  　　（五）本条所规定的香港、澳门商业服务提供者应分别符合《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和《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中关于“服务提供者”的定义及相关规定的要求。  　　第二十六条 鼓励外商投资商业企业加入有关行业协会，加强企业自律。  　　第二十七条 本办法由商务部负责解释。  　　第二十八条 本办法自2004年6月1日起施行。  　　第二十九条 原国家经济贸易委员会、对外贸易经济合作部联合发布的《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自本办法施行之日起废止。 |